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

본문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9212호, 2024. 5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참고 — 폐지된 조례의 연혁

- 제정 — 서울특별시조례 제6969호 (2019. 1. 3. 공포·시행)
- 일부개정 — 제8014호 (2021. 5. 20.)
- 일부개정 — 제8433호 (2022. 7. 11.)
- 타법개정 — 제8886호 (2023. 10. 4.)
- 폐지 — 제9212호 (2024. 5. 20. 공포, 2024. 11. 1. 시행)

폐지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(제4조)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며(제5조), 시장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음(제15조)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자치법규 연혁.